

바. 과징금 부과기준 등 규정 신설(제15조의2 신설)

법에 따라 기업 총 매출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이 경우 총 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함.

사. 화학물질 정보제공의 함량 기준 신설(제20조의2 신설)

등록·신고된 화학물질은 함량에 관계없이 정보를 제공토록 하되, 등록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은 혼합물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질의 분류·표시내용에 따른 혼합물 분류 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경우에 정보를 제공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minaseo@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n.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3,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42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속히 확보·관리하기 위하여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기존화학물질은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다음 등록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아 '3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등록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및 변경신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발암성 물질 등을 반드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화학물질 신고 및 변경신고 방법 등 신설(제3조 개정)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전에 신고서를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고, 제조·수입량의 톤수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이전에, 그 외 변경사항(분류·표시, 용도 등)은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토록 함.

나.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개정(제5조, 별표1 개정)

위해우려가 낮아 제출자료가 일부 생략되는 기존화학물질(건강·환경 유해성 분류·표시가 없는 경우, 소비자 용도로 신고한 자는 제외)은 양에 관계없이 1~10톤에 해당하는 유해성 시험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수송분리중간체도 최대 1~10톤에 해당하는 유해성 시험자료(연간 1천톤 이상 제조되는 경우)를 제출토록 함.

다.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신청 및 통지 규정 신설(제6조의2 신설)

100kg 미만의 신규화학물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선임사실 신고증, 자료보호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신고해야 하고, 과학원장은 신고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최대 14일)에 통지해야 함.

라.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등 개정(제17조 개정)

기존화학물을 신고·변경신고한 결과 소비자 용도로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며, 하나의 명칭 또는 식별 정보를 가진 화학물질이라도 고분자화합물로서 특성이 명확히 달라 동일 물질로 간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

마.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규정 개정(제35조 개정, 제35조의2 신설)

1)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제공 확대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분류·표시내용에 따라 건강 및 환경 유해성이 나타나는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보를 미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 이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정보미제공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정보제공심의위원회(영 제7조 전문위원회 신설)의 심의를 받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함(제35조의2).

2)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 유해화학물질 등 인체 위해 우려가 높은 물질은 유해성 분류·표시내용에 따라 혼합물 분류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바. 위해우려제품의 관리 관련 규정 삭제(제43조, 제44조, 제47조, 제48조 등 삭제)

위해우려제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의 관리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위해성평가의 방법, 미고시 위해우려제품 함유물질에 대한 자료제출, 회수 등의 조치명령 등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minaseo@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3,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43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공포,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제5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의 근거를 마련함. 또한 위원장의 역할과 정기회의 주기, 임시회의 개최 요건 등을 규정함.

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방법 및 절차(안 제6조~제9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과정에서 시험·검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및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또한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상세 범위를 규정함.

다. 살생물물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11조~제14조)

살생물물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와 최종 승인 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또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화학적 조성,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물질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

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안 제15조)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을 기준으로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하여 최대 10년의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함. 또한 제조·수입량, 유·위해성, 국내외 사용 및 규제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